##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영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797

발의연월일: 2021. 10. 7.

발 의 자 : 윤영덕 · 김정호 · 강은미

양향자 · 송갑석 · 민형배

이병훈 • 권인숙 • 윤미향

문진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2조제1호사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"「주택법」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"은 "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"로 변경 (2015. 8. 11 제정) 되었으며, 제5조제4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"「학교보건법」 제6조제1항"은 "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"로 변경(2016. 2. 3 제정)되었음.

이에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조속히 정비하여 현장에서의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사목 및 제5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##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사목 중 "같은 법 제43조에"를 "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에"로 한다.

제5조제4항 중 "「학교보건법」 제6조제1항"을 "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학원"이란 사인(私人)이 대	1
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	
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	
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	
교습과정(교습과정의 반복으	
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	
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	
같다)에 따라 지식·기술(기능	
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예	
능을 교습(상급학교 진학에	
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	
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	
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	
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	
같다)하거나 30일 이상 학습	
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	
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	
제외한다.	<u>.</u>
가. ~ 바. (생 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사.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	사

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
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
시설로서 <u>같은 법 제43조</u>
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
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
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
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
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
는 시설

2. ~ 6. (생략)

- 제5조(교육환경의 정화 등) ① ~ 저
  - ③ (생 략)
  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「학교보건법」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(당구장, 만화가게 및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)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.
  - ⑤ (생략)

「공동주택관리
 법」 제14조에
<u> </u>
2. ~ 6. (현행과 같음)
세5조(교육환경의 정화 등) ① ~
③ (현행과 같음)
<b>4</b>
「교육환경 보
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
⑤ (현행과 같음)